제285회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2019. 2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○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도입에 따라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○ 학교의 통합·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0조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6조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○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입니다.
통합운영학교의 학부모회 통합·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